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보령시

훈계대상자 ① 충청남도 보령시 ○○○○과 지방○○○○ ○○

② 충청남도 보령시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은 2015. 1. 2.부터 2016. 1. 3.까지, 2017. 3. 2.부터 2017. 6. 6.까지, 지방○○○○○○○ ○○○는 2016. 7. 4.부터 2017. 1. 1.까지 각각 충청남도 보령시 ○○○○과(舊 ○○○○과)에서 ○○관광 활성화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인 사무장을 채용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업 외 소득 증대 및 어촌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과 사무장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 사무장에게 어촌체험마을에서 매월 급여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급과 4대보험(자부담)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자부담)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령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촌체험마

을 사무장 7명을(누계) 채용,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체험활동 안내 지도, 홍보·마케팅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현황

사업연도	체험마을	사무장 현황			
		성 명	주 소	연령	성별
2015	○○○	○○○	보령시 ○○읍 ○○리 ○○○○길 ○○	○○	남
	○○○	○○○	보령시 ○○면 ○○○○길 ○○-○○	○○	여
		○○○	보령시 ○○면 ○○○○길 ○○	○○	여
2016	○○○	○○○	보령시 ○○읍 ○○리 ○○○○길 ○○	○○	남
	○○○	○○○	보령시 ○○면 ○○○○길 ○○	○○	여
2017	○○○	○○○	보령시 ○○읍 ○○리 간드리1길 ○○	○○	남
	○○○	○○○	보령시 ○○면 ○○○○길 ○○	○○	여

1. 사무장 급여 지급 부적정 등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지급은 1인당 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급여 지급방법은 시·군에서 어촌체험마을의 협약서 및 채용상황,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 총당금 적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되, 마지막 분기(월)는 집행확인 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촌체험마을에서는 협약에 따라 매월 보조금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인터넷 뱅킹 활용)하여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령시에서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 급여의 매월 지급 여부를 확인 한 후 매 분기(월) 어촌체험마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마지막 달인 12월분 사무장 급여 지급확인 등 정산하여 마지막 분기(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 어촌체험마을에서 2015년 ○○○, ○○○에게, 2016년 및 2017년에는 ○○○에게 급여를 매월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2015년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급여 정산 없이 마지막 보조금을, 2016년 및 2017년에는 연간 보조금 전액을 해당년도 3월에 교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사무장 급여 지급 현황

연도	어촌 체험 마을	사무장	월별 급여지급 현황												마지막 보조금 지급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	○○○	5.14.				6.11	'7.10	8.10.	9.10	10.8.	11.11.	12.9.	12.22.	12.22.
	○○○	○○○	1.27.	6.1.				해 당 없 음							12.22.
		○○○	해 당 없 음				8.20.	10.22.		'16.01.29.					
2016	○○○	○○○	3.24.	4.4.	5.2.	6.1.	7.1.	8.2.	9.1.	10.6.	12.5.	'17.1.13.		3.21.	
	○○○	○○○	4.29.			8.17.				11.14.				3.21.	
2017	○○○	○○○	3.20.			5.4.	6.2.	7.1.	7.31.	8.31.	9.29.	11.1.			3.17.
	○○○	○○○	4.5.			8.2.									3.17.

2. 사무장 퇴직급여 충당 여부 확인 등 관리·감독 소홀

같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사무장 채용에 따른 급여 지원 조건으로 사무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어촌체험마을에서 부담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 향상을 위해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도 어촌체험마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어촌체험마을에서 채용한 사무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을 마을부담으로 가입 및 적립하도록 하여야 하고, 어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 퇴직 시 충당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

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 및 ○○○어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또한 퇴직급여도 충당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5년 5월에 퇴직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인 ○○○('14. 1. 1.~'15. 5. 31.)에게 퇴직금(1,700천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보령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장 급여 매월 지급,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 및 4대보험 가입 등 사업지침을 준수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